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05 _ 2012년 3월

이 사람의 향기 |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 <허주현 소장>

포커스 |
중앙정부지출 2012년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
민선5기 의정활동 분석 및 논평
인권보장 조례 제정 확산 및 그 전망

서평 | 행복의 조건 - <엘저넌에게 꽃을>

장애와
이미지



VS



장애인콜택시? 어린이 보호차량?

..... 각 지자체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장콜)을 운영한다. 그런데 차량 색깔 대다수가 노란색이다(서울시가 대표격). 어느 지자체는 흰색으로 나온 장콜을 다시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와중 운행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물론 노란색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차량은 외관을 노란색으로 도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장애인도 어린이처럼 마냥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인가? 휠체어 리프트가 운행될 때 나오는 음악처럼, 이런 식의 배려가 오히려 장애인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05 _ 2012년 3월

CONTENTS

- | | | | |
|----|-------------|--|-------------------------|
| 02 | 장애와 이미지 | | 장애인콜택시? 어린이 보호차량? |
| 04 | 편집자 편지 | | 2012년 모니터링 사업을 소개합니다. |
| 05 | 이 사람의 향기 | | 전라남도 장애인 인권센터 —〈허주현 소장〉 |
| 15 | 포커스 I_ 예산 | | 중앙정부지출 2012년 장애인예산 분석결과 |
| 23 | 포커스 II_ 의정 | | 민선5기 의정활동 분석 및 논평 |
| 33 | 포커스 III_ 조례 | | 인권보장 조례 제정 확산 및 그 전망 |
| 38 | 서평 | | 행복의 조건 —〈엘저너에게 꽃을〉 |
| 40 | Cinema | | 삶과 죽음의 화두를 던지다 —〈청원〉 |
| 42 | 장애이슈 | | 장애계 소식 |
| 47 | 홍보 | | WebWatch |

2012년 모니터링 사업을 소개합니다.

어김없이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때론 따뜻한 위로를, 때론 따끔한 비평을 아끼지 않은 독자들에게 지면에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센터의 여러 활동을 <모니터링 리포트>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센터는 예산·정책, 장애인활동지원정책, 이동편의정책,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정책, 자치법규 등 다섯 가지 영역에서 모니터링을 시행합니다. 예산·정책모니터링과 자치법규모니터링은 계속 사업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정책모니터링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변화된 활동보조서비스 전반을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활동보조 업무에 추가되는 간호서비스, 목욕서비스 등이 기존 서비스와 잘 조화되는지, 최종중 장애인들의 서비스 요구가 어떤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동편의정책모니터링은 장애인의 교통수단, 즉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에 관한 모니터링입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한 장애인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지 꼼꼼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연계교통시스템 설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정책모니터링은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각각 시행하고 있는 출산비용지원정책을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올 한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편집인 윤 삼 호

장애인 인권보장은 당사자가 주도해야 한다!

인터뷰 · 정리 김의수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허주현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 소장/후면 좌측,
함창환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 주무관/후면 우측, 김의수 센터 선임연구원/전면 우측

2010년 5월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에 명시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 또한 전국 최초). 이번호에서는 전라남도 인권센터(목포)에서 허주현 소장와 노인장애인과 함창환 주무관으로부터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센터 운영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 편집자 주

두 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창환 주무관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1. 인권조례 제정의 취지와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이라는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까지 두어 시행 당사자인 행정기관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으나, 법을 제정하고 차별이 사라지기를 갈망하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법률에 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법률 시행 초기에 기초 자치단체 장애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장차법 이행에 따르는 시책이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차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 조항을 담은 강력한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의 청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2. 조례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와 설문조사까지 실시하셨는데 매우 유익한 조치이긴 하나 실상 모든 조례가 이런 세심한 사전조치를 거쳐 제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이러한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었던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 조례 제정의 시작은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협력사업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공무원 200명과 도민 400명을 대상으로 장애차별 인식 정도, 장차법 인지,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물론 강제 조항의 논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3. 이 조례는 지역의 청원단체들이 결합해 일궈낸 민관합동 결과물로서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원단체들이 조례 제정에서 기여한 바와 그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국내에 유사 사례나 장애 인권에 관한 문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례 내용을 구성하고 조문화하였고, 의회에 조례 청원은 민간에서 담당하였으며, 집행부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

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타 자치단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전라남도도 2006년부터 현 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제도화하는 데는 조직 내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4. 자치단체와 청원단체들의 의견수렴 및 합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가 될 듯합니다. 의견수렴 과정과 합의 도출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은 무엇이었고 의견조율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조례 제명에서 인권보장이냐 인권증진이나, 인권보장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규모, 차별 문제를 합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원회의 구성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합의·정하는 소위(소위원회) 문제는 지역의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점,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조문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인권 증진이나 보장이냐의 제명 문제는 개정을 통해 인권보장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5.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조례가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실패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장애당사자들의 입장을 가장 이해하고 대변해 주어야 할 곳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장애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

전남 장애인인권센터 표지판. 현재 전라남도도는 도내 기초지자체 주민센터 입구에 인권센터 표지판을 부착하여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들에게 인권센터를 홍보하고 있다. 표지판 전면 플라스틱 보드에 미세한 돌기가 나와 있는데 점자정보다, 표지판을 보고 센터에 전화를 하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한다.



며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고, 공청회는 물론 장애인단체, 관련기관, 시군 등에 조례 내용 등을 공개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6. 그렇다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현재 전라남도의 조례의 내용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군에서 기본계획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행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시행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를 두어 관련 내용의 자문과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심의는 물론 시행계획과 홍보계획,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단계별로 일정을 잡아 추진하다 보면 자꾸 시행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마무리 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문제들은 추진하면서 중간검토를 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직 위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의 욕구가 많이 나타나는 이동권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주무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인권센터와 관련하여 허주현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몸담고 있는 장애인 인권활동가 입장에서 장차법의 효력과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장차법은 장애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 할 수 있는데, 도구가 아무리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관건은 당사자들의 사용 빈도에 따라 더 강력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가 거듭 되면서 장애 차별에 대해 참지 않고 구제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장애 당사자들이 점점 늘고는 있지만, 조사된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차법에 대한 장애 당사자들의 인식이 아직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이 실효성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장되지 않는 권리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또한 법률의 시행 주체인 일선 행정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은 되고 있지만 조직적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적극

적인 시책이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가 3년 전에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차법의 홍보, 교육, 정당한 편의제공 준비, 편의시설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한 이후 지난해 두 번째로 모니터링 활동을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지 않고 권고에 그친 타인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2.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안하고 제정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셨는데요. 조례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는 무엇입니까?

2008년 장차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일선 장애업무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준비 과정 등을 체크하였는데,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계속 제자리를 맴돈다는 생각과 함께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에 따라 전진하거나 아니면 시간만 가거나 해서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 자치법규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협력사업에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채택되었기에 이 사업을 계기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나 FGI 심층면접조사, 영국의 '지방정부를 위한 장애평등계획'의 번역 과정, 즉 다시 말해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 파악을 연구소가 담당하고, 조문 작업은 목포경찰련의 김종익 국장이 진행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가 조례 초안을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초안을 만드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조례안 작성에서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조례 내용은 초기에 약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선정한 후에 설문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국내에 그 사례가 없어 조문을 작성한 사람이 무척 어려워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 전라남도의 조례명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국 22개 조례들의 조례명에는 인권보장 대신 '인권증진'으로 명명한 조례들이 간혹 있는데 '증진'과 '보장'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조례 제명을 결정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로 청원했으나 협의 과정에서는 실제 인권이라는 워딩 자체가 가진 포괄적

의미 탓이었는지 집행부 입장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 ‘인권’ 과 ‘보장’ 두 워딩이 쟁점이 되어 ‘인권’ 을 유지하는 대신 ‘증진’ 으로 양보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로 제정된 이후 약 4개월 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의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장’ 은 현재 시점으로 인식되었고 ‘증진’ 은 미래 시점으로 인식하여 (‘보장’ 은)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5. 실상 지자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라 특정 분야에 지속적인 집중과 기여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는 행정조직 고유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데요. 그런 까닭에 한 분야에 지속성을 갖고 있는 NGO 활동가들의 역량과 인권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권조례 초안 작성에서도 그러한 활동가의 감수성이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장애’ 정의에 사회모델 시각을 반영한 것-제2조1항 혹은 특정 항목을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명시한다던지 하는- ‘실태조사’ 와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삽입하는 등)

장애 업무 담당을 공무원 사회에서는 3D자리라고 할 만큼 기피 부서가 되어 있어 부임 순간부터 다른 부서로 옮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성 같은 것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고 그러니 새로운 시책은 영원한 희망 사항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차법은 전 행정영역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직사회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장애라는 단어만 붙으면 문화든 시설이든 모조리 힘없는 장애관련 부서로 떠미는 문제는 정말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진행에서) 일정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6.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인권센터 같은 지역 내 상설기구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한 사업 아이템들이 있었을 텐데요.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성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요,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자 했을 때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몇 년 전에 인권침해 상황에서 분리한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어 부랑인 시설이 운영하는 병동에 있다가 가해자들의 회유로 다시 되돌아가는 바람에 라포가 깨져 실패한 사실은 두고두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7. 조례에서는 실태조사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여 인권사업 시행의 구체성과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요?

기본계획은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큰 원칙으로 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대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봐도 대부분 기본계획은 빠지 않고 반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설적으로 기본계획은 다른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이는 성과는 크면서, 실제 시행은 되지 않는 그래서 부담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전년도 평가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니 이 조례에서는 그런 맹점을 보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언제 설치되었고 몇 명의 활동가들이 근무하고 있나요?

전남인권센터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소한 2003년부터 개소하여 운영해 오다가 현 박준영 도지사가 2004년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고요, 현재는 세 명의 활동가가 있습니다.

9. 인권센터 지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초기 인권센터의 예산은 2명 인건비를 포함하여 5천5백만원이었으나 6년이 지난 2012년에는 조례수행인력 3명이 더 추가되면서 총인원은 6명으로 증가했고(소장 포함) 예산은 2억4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0. 전라남도 인권센터의 사업 구성은 어떠한지요? 사업분야 제시와 함께 각 분야별 사업 목표 및 내용을 소개해 주십시오.

인권센터는 센터소장 1명, 상담팀 2명, 교육정책팀(인권조례수행팀) 2명, 행정인력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담팀의 주요 업무는 말 그대로 권리구제 사업 실행을 위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상담입니다. 연간 상담실적은 대략 350건이고, 상담분야는 차별보다 인권침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8할 정도). 비중이 가장 큰 상담영역은 역시 고용분야입니다. 특히 파트타임이나 작업장 등 비정규직 고용에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악용한 무임금 착취 및 갈취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담이 접수되면 인권센터는 일단 내용을 파악한 후 매주 월요일 사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권센터 전 직원이 참여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직원 간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토론을 통해 상담사례의 해결 방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여 피해당사자에게 선택을 제안합니다. 특히 자기방어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인권센터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구제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가 주도하는 구제방식은 손상이 심하여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 자기판단에 있어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그리고 인권상담이나 현장 확인 등 출장 업무에는 반드시 직원 2명이 함께 움직입니다. 실상 가해자의 물리적 세과 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위축되거나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팀(이하 '정책팀') 업무가 있는데요. 교육정책팀은 인권조례수행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교육정책팀은 인권조례가 제안하는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행정부가 조례의 이행과제를 원활히 진행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때문에 정책팀은 인권보장조례에서 위임한 사안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작년에는 TNS(전화리서치)를 시행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질문항의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단답형 질문이 확인 가능했고, 손상에 따른 답변 지연 등 통계 수치가 온전히 반영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올해에는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정책팀의 주요사업으로는 장차법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대상 인식 개선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 5월과 하반기 9월 두 번에 걸쳐 시·군청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전남도청은 장차법 홍보교육을 연 1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웹툰형식의 교육홍보컨텐츠를 제작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팀에서는 장차법 이행사업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군청 공공기관의 장차법 홍보/교육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준비사항 및 편의시설 적정설치 유무도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직구성에서 우리 인권센터만의 장점은 직원 중에 시각/뇌병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 특히 장애인기관에서 어려워하는 감각장애인의 손상 및 고민 문제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권센터는 장애영역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정책팀을 신설한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상 공공기관에서 장차법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환보직에 따른 감수성 및 지식 부족 등등 현

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또 기존의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조례 제정 초기부터 이 영역은 민간영역임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영역을 따로 예산 배정하면 금액이 커지는데 인권 센터 내 사업으로 지원하면 예산폭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우리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11.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억나는 사례나 인상 깊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텐데요

인권센터는 2003년 권익문제연구소의 고유사업이었는데 박준영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안하여 2006년부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권침해 상담에 집중하다가 장차법 제정 이후 법의 실효성을 고민하면서 차별구제, 교육, 홍보, (차별)실태조사, 장애업무 담당공무원 상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되었고 조례 제정으로 장차법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권침해 피해자를 분리하는 전달체계가 없어서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행정부는 대부분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전라남도도 특히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섬(00군청 관할 섬)에서 장애인 피해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SBS SOS에 방영된 신노예청년(지적장애 2급) 사례였습니다. 섬에서 14년 동안 인권피해를 입은 이 청년의 사연을 SBS는 2회에 걸쳐 방영을 했고 특집사례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이 청년도 섬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시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대를 했고, 결국 제가 주말부부라 40일을 함께 동거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으로 소식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경찰은 신속히 가해자를 구속했는데 가해자는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경찰이 신속히 구속확정하여 수사하였기 때문에 공탁금이 같은 피해사례보다 다소 많이 책정되었고 피해자는 그 공탁금을 찾아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목포에 거주하면서 비정기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기억나는 것은 행정부의 일방적 조정에 시민단체가 길들여지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도청에서는 관광객 유치 홍보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 문제가 전국에 방송을 타자 해당군청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초토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공표를 줄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허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언론 이슈화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으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슈화를 안 하면 결국 관변단체가 되는 게 아닌가하는 판단에서 이슈화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인권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청의 간섭은 거의 없습니다. 도청이 우리를 길들이고자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도청의 입장이 상충되곤 합니다. 이때 인권센터가 취해야 하는 엄정한 비판과 정도의 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할 소리는 하고 장애인단체 특유의 억지나 떼쓰지 않는다는 인식이 관청 공무원들에게 서서히 반영되었습니다. 이 2006년도 사례가 관청과의 관계 설정에서 NGO의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 기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변단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강경대응도 합니다(웃음). 하지만 관청과의 신뢰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9개 생활시설 조사를 시행했는데 우리를 안 좋게 봤다면 애초에 도청에서 우리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1개 시설은 폐쇄를 건의해 실제 폐쇄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12. 향후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의 사업 강화를 위해 보완 혹은 확장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지역적으로 전라남도 목포권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수 순천 등 동부 권역에 대한 신속 대응이 어렵습니다. 권역별 인권센터 설치가 조례에 언급돼 있으므로 동부권에도 인권센터가 설립되어서 동부지역에서의 인권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포지역이 여수 보다 인권침해 사례가 3배가 넘는데, 이것이 언론화 되었을 때, 소식을 듣고 상담소에 내방하거나 전화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론에 외화하는 작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많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13. 작년 겨울,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광주인화학교 장애인학생 성폭행·추행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라는 후속조치가 지자체와 중앙정부 및 국회 국정감사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센터는 지역 시설 인권문제에 어떠한 역할과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모니터링이 항시 가능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PNA(권리옹호체계)와 같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불시 점검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어야 합니다. 또 법적 권한을 주면서 항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처럼 법적인 지위가 있는 권리 옹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14. 지자체가 설립한 인권센터는 그 활동범위가 특정 지자체 내로 국한됩니다. 지역 내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어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이든 서울이든 하는 일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전남은 도서지역 농촌지

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섬 같은 경우 전적으로 폐쇄지역입니다.

15.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및 대전광역시 총 3곳에서 지역 인권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의 활동과 성과에 주목할 텐데요.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심 있는 NGO 활동가, 공무원, 지방의회의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형식구성상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권 침해센터나 인권센터나 가지고 설왕설래하는데, 인권센터가 포괄적입니다. 인권센터 업무에는 차별도 침해도 모두 속할 수 있는데, 인권침해는 편협합니다. 만일 인권침해라 하면 예방 사업만 할 것인가요? 인권침해는 한정된 분야라서 센터 설립 시에는 ‘인권센터’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센터의 인력편성에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가 1/2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권감수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인권센터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이 불충분하다면 극한상황일 경우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마냥 지원만 받고 사업수행이 부실하다면 그 또한 장애인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우후죽순처럼 기초지자체마다 인권센터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간 적절한 연계조직과 사업 분할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가 광역시도에서도 제정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편의시설 관련) 허가 업무는 기초지자체 소관 부서에 있기 때문에 광역시도 조례는 모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처럼 사업에 있어 중복 등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기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16. 끝으로 누구보다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인권센터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클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분들에게도 인권센터 이용과 관련해 당부하고픈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한국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참고 말지’라고 수동적으로 가면 평생 장애인 인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본인들 인권은 본인들이 챙겨야 합니다. 개선의지와 적극적 문제개선은 비례합니다. 반드시 내 억울함이나 차별 케이스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참고로 우리 센터는 자기 방어 능력이 있는 당사자가 자신이 할 일을 센터에 미루는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본인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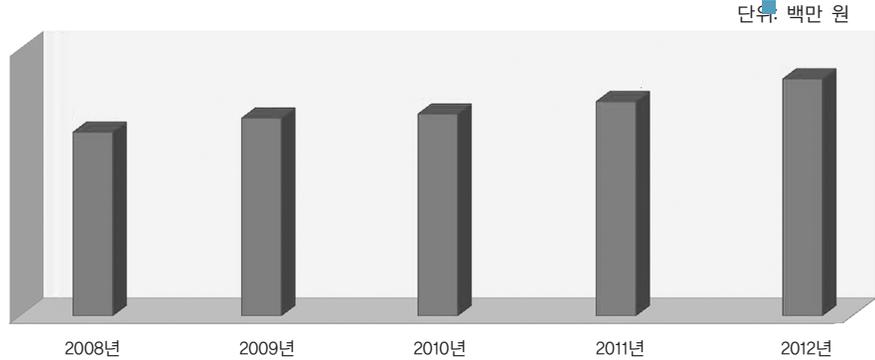
중앙정부지출 2012년 장애인예산 분석 결과

현근식 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 중앙정부지출 장애인 예산 총량은 2011년 1조 2,821억 원, 2012년 1조 4,176억 원으로 10.6% 증가.
- 2008~2012년 장애인 예산 연평균 증가율 6.6%,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 7.7% 못 미쳐.
- 전년에 비해 올해 감액된 부처는 경찰청 20억 원, 교육과학기술부 약 15억 원, 기획재정부 5억이었으며, 장애인 인권증진을 외쳤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1억 5천만 원 감액되었음.
- 2012년 예산 기준 장애인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 편성한 부처는 보건복지부(69.2%)이고, 고용노동부(13.2%), 국토해양부(7.1%), 교육과학기술부(3.9%), 문화체육관광부(3.1%)가 그 뒤를 이음.
- 장애인 예산을 8대 분야로 분류하면 2008~2012년 5년 동안 소득보장(-3.6%)과 직업고용(3.7%), 그리고 이동편의분야(5.3%)는 매우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범재)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표 안진환)가 조사한 장애인예산은 중앙정부지출의 경우 2012년 1조 4,176억 원으로 올해 복지재정(91조 9,629억 원)의 1.5%에 불과했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장애인 예산은 매년 복지재정의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 총계



○ 이번 조사는 각 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기준으로 대부분 장애특정적¹⁾ 예산을 발췌해 장애인 예산의 총규모를 파악했으며, 예산서에 장애인예산의 분리통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은 국회의 도움을 얻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완해서 이용했다. 또한 이번이 발표된 결과에는 모든 부처에 편성된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수집한 장애인 예산 총량과 세부 사업을 수록하였다. 이 광의의 장애인 예산 개념은 OECD에서 분류하는 개념인 장애인복지지출, 즉 근로무능력 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재급여(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와 상병급여(Paid sick leave)라는 항목을 제외한 것이다.

1) 장애인 예산의 종류와 범주를 분류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번 장애인 예산 조사에서는 지자체의 예산서를 검토하여 장애 특정 예산을 분석의 범주로 삼았으며 장애 형평적 예산은 장애인이라고 명백하게 분리통계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만을 포함시켰다. 즉 우리가 발췌한 장애인 예산의 범주는 각 부서의 장애인을 위한 예산(장애 특정적 예산)과 일부 장애 형평적 예산 중에 분리통계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장애인예산의 개념과 범주

예산 종류	성격별 예산 종류	내 용	비고(예)
장애정책예산	장애 특정적 예산	장애인을 위한 예산	장애인연금
	장애 형평적 예산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우대조치나 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예산	PSO
주류정책예산	일반(주류) 예산	위 두 가지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예산	기초생활보장

〈표1〉 2008~2012년 중앙정부지출의 장애인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 원, %)

부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예산	구성비									
경찰청	200	0.0	200	0.0	2,000	0.2	3,000	0.2	1,000	0.1	220.8
고용노동부	189,776	17.3	193,008	16.3	196,755	16.3	186,586	14.6	186,877	13.2	-0.3
교육과학기술부	42,527	3.9	41,604	3.5	45,027	3.7	44,872	3.5	43,338	3.1	0.6
기획재정부	24,400	2.2	35,000	3.0	54,800	4.5	27,800	2.2	27,300	1.9	12.2
문화재청	105	0.0	45	0.0	270	0.0	265	0.0	423	0.0	125.2
문화체육관광부	29,531	2.7	39,663	3.4	38,664	3.2	44,002	3.4	54,772	3.9	17.5
방송통신위원회	5,416	0.5	5,416	0.5	5,416	0.4	6,223	0.5	6,873	0.5	6.3
보건복지부	702,708	63.9	738,444	62.4	741,617	61.4	860,051	67.1	981,151	69.2	8.9
산림청	400	0.0	1,400	0.1	1,400	0.1	400	0.0	1,424	0.1	108.6
여성가족부	427	0.0	1,029	0.1	1,226	0.1	1,263	0.1	1,263	0.1	40.8
국가인권위원회	350	0.0	421	0.0	380	0.0	593	0.0	442	0.0	10.3
중소기업청	1,800	0.2	2,000	0.2	2,000	0.2	1,620	0.1	2,500	0.2	11.6
행정안전부	14,881	1.4	12,265	1.0	11,355	0.9	10,130	0.8	10,230	0.7	-8.7
국토해양부	86,712	7.9	112,701	9.5	106,837	8.8	95,286	7.4	99,984	7.1	4.7
합계(A)	1,099,233	100.0	1,183,196	100.0	1,207,747	100.0	1,282,091	100.0	1,417,577	100.0	6.6
복지재정(억원)(B)	688,176		804,151		2,000		863,929		919,629		7.7
비율(A/B)	1.6		1.5		2,000		1.5		1.5		

출처: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각 부처 조사자료, 2012.

○ 이번에 조사된 중앙정부지출 장애인 예산 1조 4,176억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0.1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IMF공식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2010년 GDP는 9,862억 달러임). 이러한 결과는 OECD의 장애인복지관련 정부지출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예산과 OECD 국가의 장애인 정부지출 평균에 대한 통계는 몇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기준과 범주가 상이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자료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장애인 예산이 OECD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08~2012년간 장애인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6.6%로 동 기간 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7.7%)에 미치지 못하였다.

2012년 예산 기준 부처 간 구성비율을 본다면, 보건복지부(69.2%)가 장애인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13.2%), 국토해양부(7.1%),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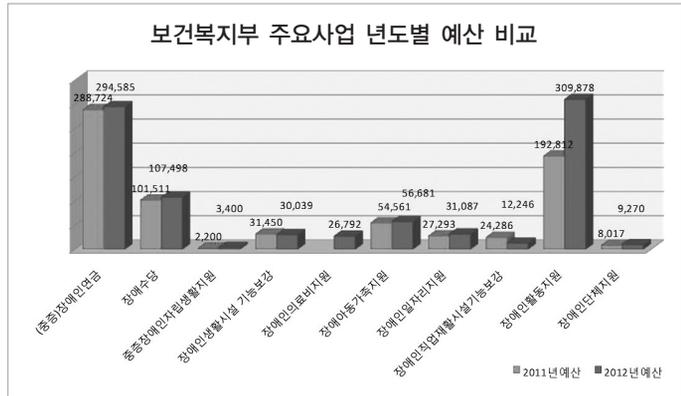
(3.9%), 교육과학기술부(3.1%)가 뒤를 잇고 있다.

■ 협의의 장애인 예산인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복지예산의 2008~2012년간 연평균증가율은 8.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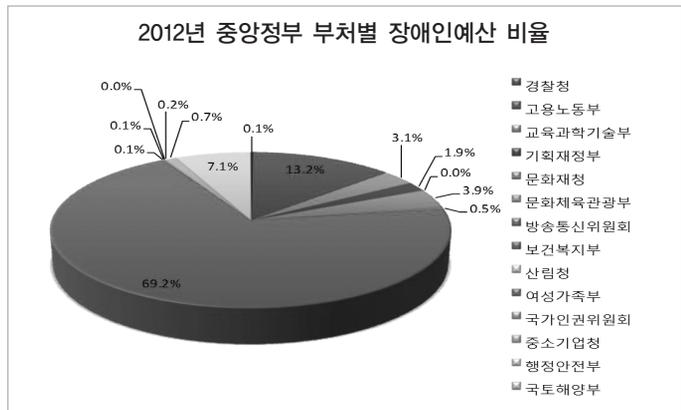
○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은 2011년 8,601억 원에서 2012년 예산안 기준 9,812억 원으로 1,211억 원이 늘어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작년 10월 활동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때까지 장애인사회활동 지원(활동보조바우처사업)으로 수행되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2012년에는 3,099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1년 사회활동지원 예산 1,151억 원과 장애인장기요양 사업 예산 777억 원을 합한 1,929억 원 보다 약 1,170억 원 가량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 외 장애인연금이 2,887억에서 2,946억 원으로 약 59억 원이 늘었고, 장애수당이 1,015억에서 1,075억으로 60억

가량 증액되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2011년 273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늘어 약 37억 원이 증액되었다. 반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가 243억 원에서 122억 원으로 약 121억 정도가 감액되었다,



■ 행정부처별 장애인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단연압도적이다. 2위는 고용노동부로 장애인고용공단과 기타 장애인관련 고용 및 직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3위 국토해양부는 저상버스지원 예산과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예산이 대부분이다. 4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장애인체육 예산과 장애인도서관지원 센터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섯 번째는 기획재정부가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0.1%와 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해당부서의 정책의지가 극히 적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 보건복지부가 아닌 타 부처의 증감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10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해양부도 약 59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 반면 감액된 부처는 경찰청(20억 원), 교육과학기술부(약 15억 원)를 비롯해 자립자금 대출을 하는 기획재정부(5억)이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외쳤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1억 5천만 원을 감액했다. 아래 <표2>는 부처별 2011년과 2012년 예산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 사업을 오히려 축소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예산 증가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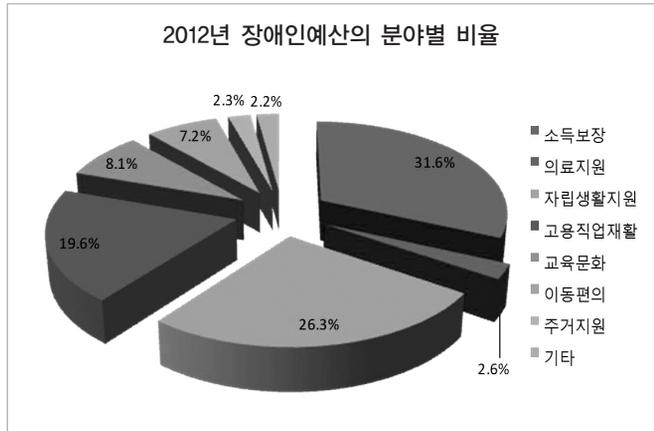
<표2> 행정부처별 장애인 예산의 2011년, 2012년 추이

(단위: 백만 원)

부처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비교증감	전년도대비증가율(%)
경찰청	3,000	1,000	-2,000	-66.7%
고용노동부	186,586	186,877	291	0.2%
교육과학기술부	44,872	43,338	-1,534	-3.4%
기획재정부	27,800	27,300	-500	-1.8%
문화재청	265	423	158	59.6%
문화체육관광부	44,002	54,772	10,770	24.5%
방송통신위원회	6,223	6,873	650	10.4%
보건복지부	860,051	981,151	121,100	14.1%
산림청	400	1,424	1,024	256.0%
여성가족부	1,263	1,263	0	0.0%
국가인권위원회	593	442	-151	-25.5%
중소기업청	1,620	2,500	880	54.3%
행정안전부	10,130	10,230	100	1.0%
국토해양부	95,286	99,984	4,698	4.9%
합계	1,282,091	1,417,577	135,486	10.6%

■ 장애인 예산을 8대 분야로 분류하면 의료지원, 자립생활지원, 교육문화, 기타 분야는 2008~2012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7.1%, 42.4%, 10.6%, 8.3%로, 전체 연평균증가율(6.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소득보장(-3.6%)과 이동편의분야(5.3%)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는 달리 연평균증가율이 매우 낮았다.

○ 소득보장에서 감소는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한 점차적인 감소분이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거나 2010년 7월에 도입된 장애인연금 재원으로 이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자립생활지원의 증가

는 두드러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활동지원법이 2011년 10월 발효됨에 따라 일부 방문 간호 등의 사회서비스 조차도 활동지원 예산에 포함되어 소득보장 다음으로 중앙정부지출 장애인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 이동편의분야에서의 증가율 둔화는 2011년에 국토해양부의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사업의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나타났다.

〈표3〉 분야별 장애인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

분야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소득보장	523,931	472,813	428,142	438,330	448,316	-3.6%
의료지원	20,432	27,384	31,131	38,655	37,258	17.1%
자립생활지원	94,940	164,343	239,452	271,717	373,381	42.4%
고용직업재활	241,112	264,147	257,198	268,912	277,804	3.7%
교육문화	77,579	86,728	89,377	95,362	115,213	10.6%
이동편의	86,712	112,701	106,837	95,286	102,031	5.3%
주거지원	29,650	29,650	25,350	33,350	31,939	3.2%
기타	24,877	25,430	30,260	40,479	31,635	8.3%
합계	1,099,233	1,183,196	1,207,747	1,282,091	1,417,577	6.6%

■ 장애인 분야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지방비 부담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문제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동일하게 대두되고 있다

○ 2006~2010년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는 연평균 24.3% 증가한데 비해,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국고보조 증가율보다 8.1%p 높은 36.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급여수준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가로 인해 지자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08~2012년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사업 국비의 연평균증가율은 8.9%인 반면, 동 기간의 지방비의 연평균증가율은 14.0%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지방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구나 이번에 조사한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만을 투입해야 함으로써 지방 재정 부담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방이양사업의 경우에 다른 분야에 비해 장애인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은 총 25개로 전체 67개 사업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국비보조 장애인 정책 사업 국비 및 지방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부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예산	지방비
경찰청	200	-	200	-	2,000	-	3,000	-	1,000	-
고용노동부	189,776	-	193,008	-	196,755	-	186,586	-	186,877	-
교육과학기술부	42,527	-	41,604	-	45,027	-	44,872	-	43,338	-
기획재정부	24,400	-	35,000	-	54,800	-	27,800	-	27,300	-
문화재청	105	-	45	-	270	-	265	-	423	-
문화체육관광부	29,531	-	39,663	-	38,664	272	44,002	650	54,772	140
방송통신위원회	5,416	-	5,416	-	5,416	-	6,223	-	6,873	-
보건복지부	702,708	307,378	738,444	365,263	741,617	395,925	860,051	470,166	981,151	517,885
산림청	400	-	1,400	-	1,400	-	400	-	1,424	-
여성가족부	427	352	1,029	352	1,226	413	1,263	388	1,263	431
국가인권위원회	350	-	421	-	380	-	593	-	442	-
중소기업청	1,800	-	2,000	-	2,000	-	1,620	-	2,500	-
행정안전부	14,881	-	12,265	-	11,355	1,575	10,130	2,825	10,230	2,825
국토해양부	86,712	74,125	112,701	100,700	106,837	92,120	95,286	93,857	99,984	93,500
합계	1,099,233	381,855	1,183,196	466,315	1,207,747	490,305	1,282,091	567,886	1,417,577	614,781

■ 정책제언 및 조사의 한계점

조사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지출에서의 장애인분야에 대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 예산은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었지만, 전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장애인 예산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GDP대비 장애인복지 정부지출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므로 매년 장애인 예산을 대폭 증액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확충될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 욕구에 따라 분야별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 이를 테면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에 대한 폐지가 장애인 소득보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지급수준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지원분야에서는 시설위주의 정책이 자립생활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반영하여 재가장애인이 일반 국민과 같은 공간에서 차별 없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에 좀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동편의 부분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계속 요구된다.

셋째,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대부분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을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활동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자립생활지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탈시설을 위한 예산이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확보해야할 매우 중요한 자립생활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더 많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선 및 조직 개편과 인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중앙정부지출의 장애인복지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에 바탕을 두으로써 빈곤계층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부재원이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전달체계 미흡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예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복지재정 관련 데이터인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장애인 복지재정 관련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다. 특히 차후에 발표하게 될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어떤 지자체에서는 두 개의 국고보조사업이 하나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포함되는 등 재정자료가 모호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예산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정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선5기 의정활동 분석 및 논평

김애영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지난 2010년 7월 새롭게 선출된 민선5기 지방의회의 막이 올랐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센터는 이때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16개 광역의회 활동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통해 모니터링했다. 의정활동 모니터링에서 늘 제기되는 문제는 광역의회에서 논의되는 전체 발언 중에서 장애와 연관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발언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다행히 이번 2011년 민선5기 1차년도 16개 광역의회의 회의록을 모니터링 한 결과 장애관련 발언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 관련 발언은 총 2,324건이 발생해, 2010년의 1,622건에 비해 702건이 증가한 수치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증가가 민선 5기 1차년의 광역의회 의원들이 장애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인지 혹은 선거 후 시작하는 첫 의회여서 열성적이었는지 여부는 2차년 의정 모니터링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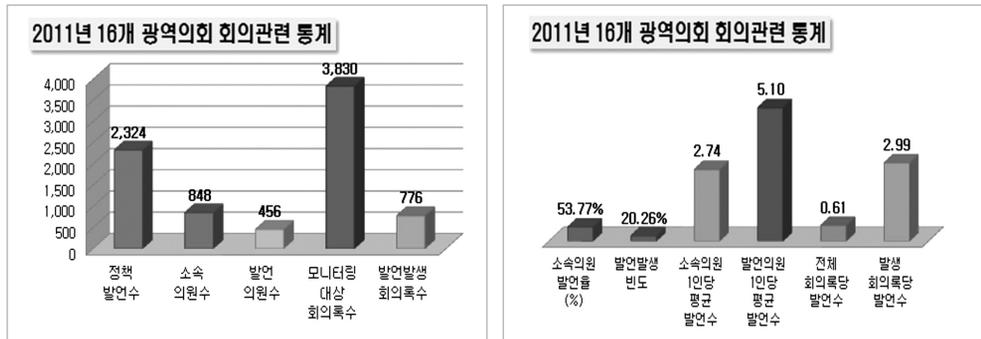
〈표1〉에서 보듯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16개 광역의회에서 활동한 의원의 수는 모두 848명으로, 이들 중 456명이 장애인의 문제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를 환산하면 전체 의원 중 53.77%에 해당하며, 절반을 약간 웃도는 의원들이 장애인을 지역주민으로서 인정하고 이들의 현안이 지역사회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2011년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발언 기초통계

광역의회 회의관련 총계					발언점수							발언분류(%)			
소속 의원 수	발언 의원 수	발언 수	소속 의원 1인당 평균발언 수	발언 의원 1인당 평균발언 수	구분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계	단순질의	현황파악질의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 제시
848	456	2,324	2.74	5.10	발언점수 총점	4284.54	1782.92	2182.63	2385.92	2009.46	12645.46	13.78	44.8	33.42	7.93
					발언점수 평점	1.84	0.77	0.94	1.03	0.86	5.44				
					발언평점 (백분율)	61.45%	25.57%	31.31%	34.22%	28.82%	36.27%				

민선5기 모니터 대상 회의록 수는 모두 3,830개였다. 이 중 장애인 관련 정책 발언이 나온 회의는 776개에 불과해, 20.26%의 회의에서만 장애인정책이 논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은 전체 회의록 1개당 수치상 0.61건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환산되는 양인데, 광역의회 전체 회의 중 장애인 관련 발언은 1건에도 못 미칠 정도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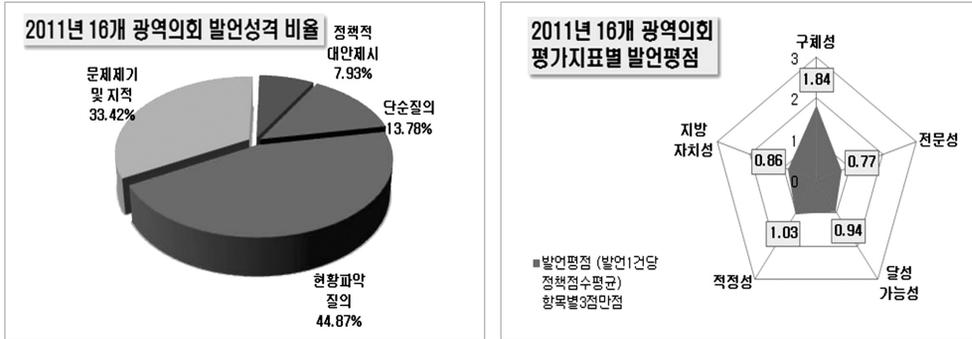
〈그림 1〉 2011년 광역의회 장애인 정책 회의관련 통계



이러한 결과는 정책점수 평가와 더불어 실시한 발언 성격 분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질의’와 ‘현황파악 질의’로 분류되는 발언의 합이 전체 58.65%를 차지했다는 것은 의원들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준비 없이 의정회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발언의 공통점은 광역의회 의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한 준비 없이 의정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관련 사업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물어본다거나, 문제에 핵심에 도달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치 따지기에 급급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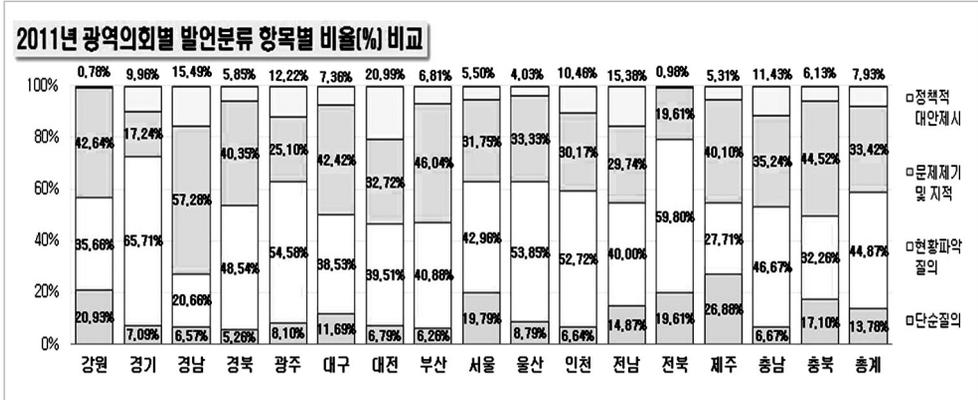
〈그림 2〉 2011년 광역의회 장애인 정책 발언 지표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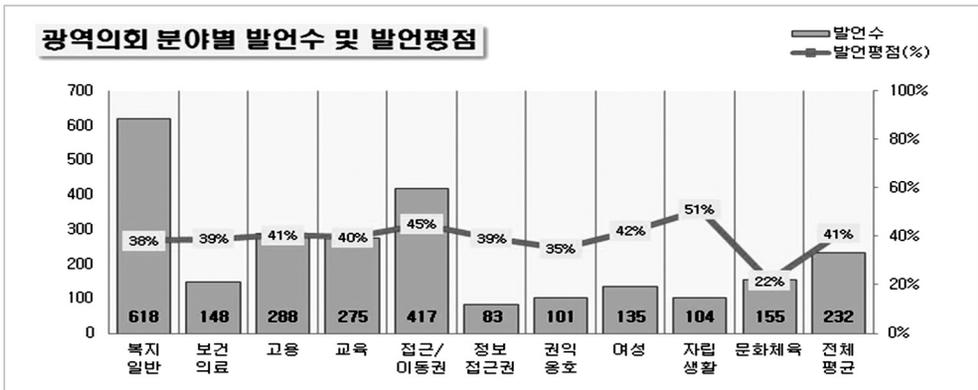
장애인정책 발언 중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는 ‘정책적 대안 제시’ 질의는 7.93%라는 높지 않은 수치를 차지했다. ‘문제제기 및 지적’ 발언은 33.42%로 높게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제기 및 지적’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발전적인 문제제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계획한 장애인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적 수준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다지 높게 평가할 요인은 못 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16개 광역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 점검하는 데 그친다면 이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에서 상대적으로 논외로 취급되기 쉬운 장애인정책의 특성상, 장애인 문제를 사각지대에 놓아두고 외면해 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지방의회의 목적과도 위배되는 일이며, 과연 광역의회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장애인 정책 발언 분야별 분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몇몇 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복지일반’ 분야가 가장 많은 정책 발언수를 기록했으며, ‘접근/이동권’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정보접근권’ 과 ‘여성/아동’, ‘자립생활’ 분야는 올해 새로 추가된 ‘문화체육’ 분야보다 적은 발언수가 발생했다. 의정활동 가운데 장애 관련 발언은 전체 발언 가운데 여전히 그 비중이 낮다. 그런데 그리 많지 않은 장애 관련 발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점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3〉 2011년 광역의회 장애인 정책 발언분류 항목별 비율 비교



〈그림 4〉 2011년 광역의회 장애인 정책 발언분야별 발언수 및 발언평점



1. 장애인정책 우수 의회

모니터링을 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16개 광역의회의 장애인 관련 의정활동 전반을 점수화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회를 ‘장애인정책 우수 의회’로 선정하였다. 점수는 ‘복지 분야 중에서도 소수로 간주되는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하여 의회 전체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장애 정책에 활동에 참여하였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6개 지표에 의한 평가 점수를 모두 더한 값이다. 다음 〈표 2〉는 평가점수를 합산해 1위부터 16위까지의 광역의회를 순위대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2011년 장애인정책 우수 의회

순위	지역명	소속의원 1인당 발언수	소속의원 대비 발언율	전체회의록 대비 발언발생율	장애인관련 조례 발의점수	발언 1건당 평균점수	정책적 대안제시 비율(%)	계
1	광주	100.0	100.0	84.44	100.0	70.17	58.21%	512.82
2	인천	83.08	88.38%	83.56	72.53	73.23	49.83%	450.61
3	대전	21.43	62.50%	60.60	57.94	100.0%	100.0%	402.46
4	서울	44.17	68.42%	100.0	57.94	66.38	26.20%	363.10
5	전남	10.82	40.19%	46.10	66.52	63.83	73.30%	300.76
6	울산	39.12	85.76%	58.71	38.63	54.44	19.20%	295.86
7	제주	33.96	63.19%	58.89	50.21	62.83	25.31%	293.86
8	부산	35.24	55.19%	78.76	19.74	67.04	32.47%	288.42
9	전북	32.63	88.18%	73.40	19.31	50.34	4.67%	268.54
10	경기	13.70	53.75%	63.05	34.76	50.27	47.46%	263.01
11	경남	12.42	44.07%	41.86	19.31	68.90	73.82%	260.38
12	충북	29.77	74.29%	61.00	0.00	64.27	29.20%	258.53
13	대구	23.37	54.17%	49.68	19.31	58.65	35.06%	240.25
14	충남	16.05	45.74%	39.35	19.31	58.32	54.45%	233.23
15	경북	9.33	27.51%	23.25	8.58	56.46	27.86%	153.00
16	강원	9.44	39.18%	27.73	0.00	68.66	3.69%	148.70
광역 평균		32.16	61.91	59.40	36.78	64.58	41.30	296.11

점수를 산정한 결과 의정모니터링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4년 연속 '광주광역시 의회'가 가장 우수한 의회로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소속의원 1인당 발언수', '소속의원 대비 발언율', '장애인관련 조례 발의점수' 등 3가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여타의 의회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광주광역시 의회가 4년 연속으로 1위를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것은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집행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2위는 '소속의원 1인당 발언수', '소속의원 대비 발언율', '장애인관련 조례 발의점수' '발언 1건당 평균점수' 등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인천광역시 의회'가 선정되었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6가지 지표 모두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인천광역시 의회는 장애인 관련 조례에서 1위를 차지한 광주광역시 의회와 같은 6건의 조례가 제·개정되었다.

'발언 1건당 평균점수' 과 '정책적 대안제시 비율'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질적 수준이 높

은 발의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대전광역시 의회'가 3위에 선정되었다. 또한 '전체회의록 대비 발언발생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가장 빈번하게 장애인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의회'가 4위로 선정되었다. 지난 민선 4기 광역의회 활동평가에서 10위를 기록했던 서울특별시 의회의 상승이 눈에 띈다. 다수의 영역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전라남도 의회'가 그 뒤를 이었다. 전라남도 의회는 발언 1건당 평균 점수와 정책적 대안 비율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5위에 선정되었다. 전라남도 의회는 서울특별시 의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5위로의 큰 순위 상승이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의회는 충청남도 의회, 경상북도 의회, 강원도 의회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들 해당 의회의 의원들의 좀 더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작년 한 해 중위원을 차지했던 충청남도 의회와 강원도 의회의 하락은 광역의회 전체 평가 결과에서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2011년 의정활동은 우수 의회로 선정된 상위권 4개의 의회가 6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광역의회별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한 예로 장애인정책 의회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강원도 의회의 경우 '발언 1건당 평균 점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광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평가가 "의원들의 참여"라는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절대적인 의정활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16개 광역의회 간의 단순한 상대적 비교만을 위한 평가라는 점에서, 평가 결과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주광역시의회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강원도 의회의 평가점수가 약 3.5배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의회에서 의원들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참여정도의 차이에만 머문다면 다행이겠으나, 이러한 의원들의 참여의 차이가 자칫 장애인정책의 지역적 편차를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국의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단체들의 정책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정책 우수 의원

2011년 가장 우수한 장애인정책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서울특별시의 '이상호 의원'이 선정되었다. '이상호 의원'은 장애인당사자 의원으로서 발언점수와 조례점수에서 많은 점수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상위 10명의 의원 중 6명의 의원(이상호 의원, 박순남 의원, 정병문 의원, 이경혜 의원, 문상필 의원, 고만규 의원 등)들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가 장애인정책 활성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3〉 2011년 광역의회 장애인정책 우수 의원 명단

순위	2011년 광역 의회			발언점수							발언분류(%)		
	지역명	의원명	발언수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발언평점 발언 1건당 평균	발언평점 백분율 (%)	발언 점수	조례 점수	최종 점수
1	서울	이상호(민)	82	131.0	125.67	101.0	135.33	101.0	7.24	48,29%	594.0	90.0	684.0
2	인천	박순남(민)	98	494.67	8.0	57.67	28.33	4.0	6.05	40,32%	592.67	52.0	644.67
3	광주	정병문(민)	77	116.0	60.0	81.67	100.33	85.0	5.75	38,35%	443.0	143.0	586.0
4	부산	이경혜(한)	77	91.33	106.67	90.67	102.0	77.0	6.07	40,49%	467.67	10.0	477.67
5	광주	문상필(민)	23	37.33	20.33	26.33	26.67	24.67	5.88	39,23%	135.33	143.0	278.33
6	제주	박주희(국참)	37	55.33	47.0	53.0	61.0	43.67	7.03	46,85%	260.0	-	260.0
7	서울	고만규(한)	39	53.00	47.0	41.33	53.67	41.33	6.06	40,40%	236.33	-	236.33
8	광주	강은미(통진)	38	60.0	29.67	39.0	41.0	47.67	5.72	38,13%	217.33	-	217.33
9	인천	박승희(한)	22	122.33	1.67	4.33	9.67	6.33	6.56	43,74%	144.33	72.0	216.33
9	제주	박희수(민)	30	46.67	35.0	44.67	50.67	39.33	7.21	48,07%	216.33	-	216.33

1위를 한 ‘이상호 의원’은 복지를 전담하는 위원회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이 의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되었다. 또한 이 의원은 2011년도의 서울특별시의 장애인관련 발언은 총 488건의 16,80%에 해당하는 82건의 발언수를 기록하였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복지일반, 권익옹호, 자립생활, 여성, 접근이동권, 교육, 고용 등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는 장애 정책 중에서도 그 비중을 낮았던 여성, 권익옹호, 자립생활 분야에서의 발언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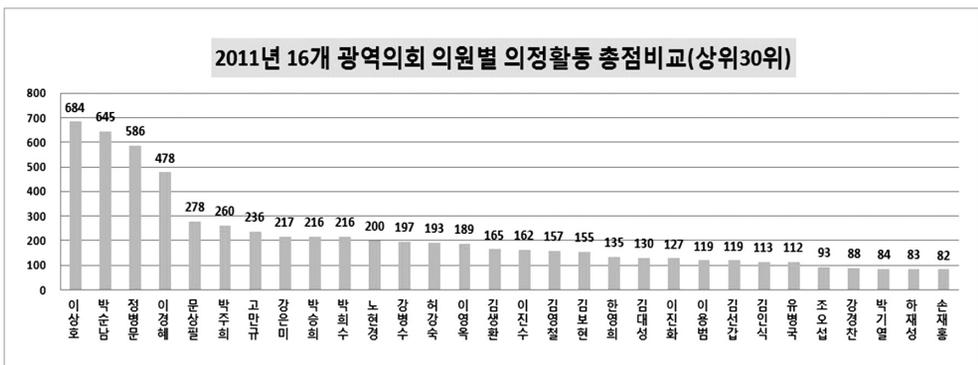
2위는 인천광역시 의회의 박순남 의원으로 발언수 98건, 발언점수 592.67점, 발언평점 6.05점으로 주로 문화체육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황파악이나 문제제기의 성격의 발언들을 하였다. 특히 전체 발언의 32%에 달하는 발언수 98건으로 발언점수 부분에서 1위인 이상호 의원과의 차이가 1.33점에 불과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의 발언뿐만 아니라 3개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광역시 의회의 '정병문 의원' 이 3위에 선정되었으며, 광역의회 모니터링 대상 의원 중 장애인 관련 조례 점수 평가항목에서 같은 지역 문상필 의원과 함께 가장 많은 143점을 득점했다.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생활지원금지급,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등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제정에 관여했다. 이는 정 의원의 활동이 광주광역시 의회가 우수의회 평가에서 장애인관련 조례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이경혜 의원' 은 발언수 77건, 발언점수 467.67점, 발언평점 6.07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 발언평가 항목 즉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등 간 점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발언성격에서는 현황과약 및 문제제기 질의가 약 92%에 달하는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이경혜 의원의 발언수 77건은 부산광역시 전체 발언(181건)의 42.54%에 달하는 양으로, 부산광역시의 장애정책을 주도했다고 평해도 무방한 기록이다.

5위에 선정된 광주광역시 '문상필 의원' 은 발언수 23건, 발언점수135.33점, 발언평점 5.88점으로 발언점수는 상위10에 선정된 의원 가운데서는 가장 낮았으나, 조례점수에서 143점을 받았다. 문의원은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교육 분야와 문화체육 분야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 또한 같은 의회 소속의 정병문 의원과 함께 조례 제·개정에 많은 힘을 쏟은 것이 점수로 연결되어 광주광역시 의회가 조례부분 평가에서 선전함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5〉 2011년 광역의회 상위30위 의정활동 총점 비교



6위는 제주특별자치도 '박주희 의원' 이 발언수 37건, 발언 점수 260점, 발언 평점 7.03을 받아 선정되었다. 박주희 의원은 소속 의회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많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광역의회 통계에서 그 비중이 낮았던 고용 분야와 정보접근권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복지일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언 평점이 7.03점으로 우수의원 10권에 든 의원 가운데 3위로 평점이 높아, 발언의 질적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7위를 차지한 서울특별시의 '고만규 의원' 은 소속 광역시에서 2번째로 많은 발언을 했는데, 여성분야와 복지일반 분야, 자립생활 분야와 고용 분야에 관한 발언이 많았다.

8위에 선정된 광주광역시의 강은미 의원은 발언의 성격 가운데 정책적 대안 제시 비율이 20.18%로 높아, 단순히 현황파악에 그치는 해당 문제나 질의에 대한 사전 고민이나 성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 9위는 인천광역시 박승희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박희수 의원으로 발언 점수는 동점 216.33점으로 나타났다. 점수를 얻은 영역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박승희 의원은 발언 점수 144.33점과 조례 점수 72점을 받아서, 박희수 의원은 발언 점수 216.33점이 최종 점수가 되었다.

이번 우수 의원 선정에서 특이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1년과 의원들이 제정하거나 개정 한 조례에 대한 양적평가가 포함되었다는 점인데, 광역의회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를 제출하여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의원들이 단순히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의와 지적을 넘어서 직접적인 정책 대안을 생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며, 우수 의원들 모두가 이러한 정책 생산에도 의욕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오는 말

16개 광역의회는 지역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인구 대비에 따라 의원수가 많은 곳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도 각기 다르기에 이들이 논의하는 장애인정책의 발언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고 모니터링의 결과를 추출해 몇 마디 말로 분석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16개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을 비교해 보는 것은 각기 다른 광역의회와 소속된 의원들이 자신의 틀 안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서로 자극을 받아 더욱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해 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기초자료가 시금석이 되어 앞으로의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 논의가 더욱 더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장애인 인권 조례 제정 확산 및 그 전망

김의수 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장애인 인권 조례가 늘고 있다. 제작년 5월 전라남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래, 동조례는 22개로 증가했다(광역 8, 기초 14, 아래 <표 1> 참조). 한 달에 1개씩 제정된 셈이다. 장애인 조례 제정이 이처럼 급물살을 타는 경우는 좀처럼 보기 드물다. 가령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최초 제정된 지 6년이 흘렀으나 30개에 불과하다.

이 조례가 지자체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조례 주제가 기인하는 듯하다. 주제가 표방하는 보편적 가치에 이의 제기할 사람은 드물다. 과시하기 좋다는 말이다. 하지만 보편성은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만드는 건 용이하나 실행 의지가 없으면 조례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이제는 기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에 내실을 기할 때가 된 듯하다. 예컨대 전라남도 노인장애인과의 인권센터는 타지자체의 방문을 받아 자문을 해줬다고 한다.

인권조례 제정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들은 무엇일까. 일단 조례명은 ‘인권증진’이 아니라 ‘인권보장’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인권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때문에 지방정

〈표1〉 전국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현황(2011.11.기준)

(2011.11.기준)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
광역(8)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1.13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011.05.30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24
	광주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3.02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8.05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1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06.29
기초(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9.23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1.05.1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2011.10.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05.0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6.10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7.08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2011.02.10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1.10.31
	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	2011.09.22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	2011.08.11
	경기도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10.18
	전라남도 나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4.20
	전라남도 목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0.12.27
	전라남도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1.07.29

부도 상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책수행의 의지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증진’은 현재는 불충분하더라도 미래 어느 시점에는 보완하겠다는 일말의 여지를 부여하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하지만 ‘보장’은 현재시점에서 반드시 실행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요소가 강하다. 소관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개념차가 불러올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담당자들일수록 조례 제정시 ‘증진’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의 실제 사례도 있었다.

둘째, 기초단체 인권조례에 인권센터 설치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문이다. 인권센터는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수행비 등을 합해 현재 최소 1억 5천 이상 ~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인권센터의 운영활성화와 수행실적에 따라 증액도 가능하다. 서울 25개 기초단체마다 3억 규모의 인권센터가 설치돼 25개의 센터가 동시 운영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싼 도넛 형태라 경기 남북부에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경기도가 도청소재지 수원에 인권센터를 설립한다고 가정하면 경기북부 의정부시 거주 장애인은 접근이 어려울 것이다. 때문에 경기도는 남·북부지역에 최소 1개씩의 센터 설립이 요구된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도서지역을 포괄하고 있고 좌우로 길기 때문에 현행 목포 소재 인권센터와 더불어 동부지역(여수 등)에 인권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문제는 기초단체마다 반드시 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느냐이다. 사업 중복 가능성이 클 것이다. 기초단체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기 보다는 광역 시도 인권센터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기초단체가 특화할 수 있는 고유 인권사업을 발굴하여 광역 시도 업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광역 시도 인권센터가 운영되긴 하나, 수행에 있어 기초단체가 더 효율적인 업무도 분명 존재할 수도 있어 기초단체는 광역 시도 인권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협력업무 조항도 기초단체의 조례에는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조례에는 반드시 장애인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언급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없는 정책은 실행 자체가 곤란하다. 필히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의 조례도 마찬가지다. 실태조사가 치밀할수록 장애인 인권 및 복지정책 수립의 타당성과 정책우선 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단 기본계획과 더불어 시행계획을 별도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가장 훌륭한 것이나, 하나만 있어도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넷째, 인권사업은 홍보에 따라 사업실적과 활동폭이 좌우될 수도 있다. 다각도의 홍보정책이 요구된다. 가령 전남도청은 기초지자체 주민센터마다 인권센터 명패를 부착하여 방문하는 장애인들에게 센터를 홍보중이며 명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보고 센터에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다섯째, 조례에는 인권센터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상급 위원회 구성항목이 포함되는데 위원회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끝으로 조례 제정 후 구체적인 정책시행이 없다면 조례 제정실적만 늘어날 뿐 장애인의 인권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지의 표방임을, 특히 인권과 같은 분야는 특히 더 그러함을 제정 주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구태의 지양이야말로 장애인 인권사업의 출발점일 것이다.

<표2> 전국 장애인 인권조례 일부항목 비교

(2011.11.기준)

구분	지역	조례명 인권보 장/증진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실태조사/ 결과처리	인권 센터 설치	위원회수/당사자 포함 비율	제정일
광역시 (8)	전남	보장	5년	매년	실시 후 결과 의회보고	강제	15인 이내장애인 과반수 이상	2010.5.13
	서울	증진	매년	기본계획 내 포함	기본계획 내 포 함	임의	X	2011.01.13
	광주	보장	5년	매년	실시 후 결과 의회보고	임의	15인 이내 구성	2011.03.02
	대구	증진	5년	매년	실시 후 결과 의 회보고	X	15인 이상/장애인 과반수 이상	2011.05.30
	제주	보장	5년	매년	실시 후 결과 의 회보고	X	장애인복지위원회 대행 (30인 이내 장애인 과반수)	2011.06.29
	대전	보장	5년	매년	실시 후 결과 의 회보고	X	15인 이내 / 장애인 과반수 이상	2011.08.05
	강원	보장	5년	매년	실시	X	장애인복지위원회 대행 (또는 15인 이내 장애인 과반수 이상)	2011.09.23
	인천	보장	5년	매년	실시	임의	15인 이내 구성	2011.10.24
기초 (14)	광주 광산구	보장	5년	X	실시 /연차보고서 작성 신고센터 개설	X	장애인복지위원회 대행	2010.05.06
	전남 목포시	보장	5년	X	기본계획 내 포 함	X	9인 이내 /장애인 과반수 이상	2010.12.27
	광주 북구	보장	4년	X	실시 / 신고센터 개설	X	9인 /장애인 1/3 이상	2011.02.10
	전남 나주시	보장	5년	매년	기본계획 내 포 함	X	장애인복지위원회 대행 (30인 이내 장애인당사자 1/2 이상)	2011.04.20
	서울 양천구	보장	4년	매년	실시	X	15인 이내 / 장애인 과반수 이상	2011.05.12
	광주 서구	보장	5년	매년	기본계획 내 포함	X	9인 이내 /장애인 과반수 이상	2011.06.10
	광주 남구	보장	5년	매년	기본계획 내 포함	X	장애인복지위원회 대행 (16인 이내 장애인 1/2 이상)	2011.07.08
	전남 순천시	보장	5년	매년	실시 후 결과 의회보고	강제	15인 이내 / 장애인(단체) 과반수 이상	2011.07.29
	서울 강북구	보장	5년	매년	실시	X	30인 이내 /장애인 1/2 이상	2011.09.23
	대전 서구	보장	X	매년	실시	X	장애인복지위원회 대행 (20인 이내 장애인 1/2 이상)	2011.10.14
	경기 하남시	보장	수립	수립	실시	X	9인 이내 /장애인 1/3 이상	2011.10.18
	경기 군포시	보장	X	X	X	임의	9인 이내/장애인 2명 이상	2011.09.22
	경기 성남시	증진	5년	매년	실시	임의	9인 이내/장애인 4인 이상	2011.08.11
	울산 북구	기타	5년	매년	실시	임의	15명 이내(북구 인권증진 조례 준용)	2011.10.31

행복의 조건

□ 〈엘저넌에게 꽃을〉 □

글 김애영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대니얼 키스가 쓴 「엘저넌에게 꽃을」이라는 책은 한 지적장애인의 이야기다. 빵가게에서 청소를 하며 살아가는 아이큐 70의 찰리는 똑똑해지고 싶어 한다. 똑똑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친구가 생길 것이며,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과도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찰리에게 자신의 이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지적장애인의 지능을 높일 수 있을 지도 모르는 뇌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이야기는 찰리가 수술을 받기 이전의 삶과 받은 이후의 삶을 찰리의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그 과정에서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중적인 시각을 깨닫게 만든다. 아이큐 70일 때의 찰리와 아이큐 184의 찰리는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찰리를 때로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때로는 놀림감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막상 찰리의 지능이 높아지자 배타적이고 질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찰리를 대하는 주변인들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지적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다르지 않다. 즉 지적장애인은 동정은 받을지언정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 지적장애인의 삶이 힘겹고 초라해 역설적으로 고된 삶이 지치고 힘든 비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어쩌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사라졌을 때 니머와 같은 태도를 취할지도 모른다.

찰리를 수술한 학자 니머는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비크맨대학에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우리는, 자연이 낳은 한 창조의 오류에 도전하여, 우리의 새로운 기술로 우수한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해 깊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찰리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는 사회에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친구도 없고 보살펴 주는 가족도 없었지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만한 능력도 없이 대도시에 홀로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와의 접촉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지요. 찰리 고든은 이 실험 전에는 실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머의 이런 말에 찰리는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 개인의 보물로

서 창조된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에, 내가 왜 이토록 분노를 느끼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확신한다. 시카고에 도착한 이래 내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 맴돌고 있던 어떤 생각의 메아리였다. 나는 일어나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를 향해 소리쳐주고 싶었다. ‘난 인간이야. 부모도, 기억도, 과거도 있는 …… 인간이라구! 당신이 나를 그 수술실로 데리고 가기 전에도 난 존재하고 있었다고! 라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지적장애인들도 찰리처럼 반응할지 모른다. ‘우리도 인간이야.’ 라고. 이러한 외침이 없는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몫이 아닐까. 지적장애인의 삶과 그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한번쯤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점이 바로 이 책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학문적인 접근은 정보와 지식을 줄지언정 감동을 주기란 매우 어렵다. 반면 「엘저넌에게 꽃을」은 무거운 주제를 친숙하고 쉬운 방식으로 다가오게 만든다. 작가는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그 첫 번째가 ‘경과보고서’ 라는 양식이다. 찰리가 직접 작성하는 경과보고서라는 장치를 통해, 불필요한 상황설명을 없애으로써 글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한다. 어눌하고 맞춤법을 틀리게 써가는 어린아이 일기 같은 찰리의 보고서에서 언어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등의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고든씨의 경과보고서로의 변화과정은 다름 아닌 찰리에서 고든으로 갈수록 지능이 높아져감에 따라 발생하는 갖가지 상황의 변화와 맞물린다. 이 모든 것을 문체의 변화로만 표현해 낸 작가의 참신한 글쓰기가 돋보인다.

두 번째 장치는 지적장애인인 찰리를 1인칭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여섯 살 옥희의 시선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었던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애뜻하고 안타까운 사랑으로 느껴졌던 것처럼, 이 책의 주인공 찰리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은 지적장애인을 우리와 가까운 한 사람으로 다가오게 만들며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행복해지기를 응원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책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적장애인의 이야기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엘저넌에게 꽃을」이란 책을 ‘장애’ 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지적장애인만의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만들며, 진정한 행복에 대해 한번쯤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의 거울이며 일기이다. 삶에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는 행복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찰리의 조건은 지능이 높아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넘치게 갖춰졌을 때 아이큐184의 천재가 되었을 때 찰리는 방황하고 불행한 고든씨가 되었다. 이 사회가 아이큐 70의 지적장애인일 때의 찰리와 아이큐 184일 때의 고든씨를 같은 인격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고 유연한 곳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해본다. 행복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회 말이다.

엘저넌에게 꽃을, 대니얼 키스/김인영 옮김, 동서문화사

삶과 죽음의 화두를 던지다

□ 영화 <청원> □

글 이병원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까? 삶의 고통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자에게 그 누가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강요할 수 있을까? 삶의 반대말은 과연 죽음일까? 영화 <청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천재 미술사 이튼은 미술공연 도중 라이벌미술사의 계책에 의해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된다. 이후 이튼은 콧등에 내려앉은 파리 한 마리조차도 혼자서는 내쫓지 못한다. 어떤 날은 천장에서 새는 물을 밤새 맞으며 추위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이튼은 이 극단의 변화 앞

에서 좌절하지 않는다. 전신마비 이후에도 이튼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제2의 삶을 산다. 그러던 어느 날 이튼은 법원에 한 가지 청원을 한다. 자신의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그에게서 희망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위선자라 손가락질한다. 그와 비슷한 처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튼의 대범한 선택에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로 그를 판단하려 든다.

비장애인들에게 죽음은 곧 선택의 문제이다.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선택, 즉 자살은 삶의 부재가 아닌 삶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이튼은 자살의 선택조차도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몸을 지녔다. 그렇기에 그의 안락사 청원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 라는 정체성 선언과도 같다.

나는 장애란 단순한 육체적 불편함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 따위가 아닌 나의 가치와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장애등급과 비슷하게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학력과 직업과 부와 명예의 수준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이러한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제 가치와 생각을 매몰시키는 현대인들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기준만큼 무의미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그것이 무의미하다면 스스로 죽음의 선택이 가능한 사람들이 죽음조차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국가와 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생명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권위적 차별이 아닐까? 결국 죽을 수 있는 권리의 박탈은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억압을 의미한다.

안락사라는 것은 안락사 시점에서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안락사를 실행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총체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튼의 안락사라는 선택은 그가 겪어온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조건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튼이 살아온 삶의 총체적 맥락을 뒤로 하고 안락사 시점의 순간만으로 내리는 옳고 그름의 단순 도덕적 명제는 어쩌면 가장 악의적인 폭력일 수도 있다.

이 영화가 안락사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진 말자.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라며 안락사를 종용하거나 그래도 살아야 한다며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하는 이분법의 함정에 빠지지도 말자. 삶과 죽음이라는 철학적인 화두 앞에 주인공 이튼만큼 숙고해보지 않았다면 다만 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도리이다.

영화를 보도록 동기를 부여하자면 매력적인 배우들이 연기력 또한 뛰어나다는 점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신의 몸매를 지닌 이튼 역의 리틱 로산은 전신마비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와 연기 호흡을 맞춘 미스월드 출신 여배우 아이쉬와라 라이(소피아 역)의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연기도 볼만하다. 더불어 영화 중간 중간 나오는 과거 이튼의 화려한 마술쇼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무거운 주제 앞에 흥겨운 음악, 이 어울리지 않는 영상과 음악을 조화시킨 연출력도 뛰어나다. 곳곳에 숨어있는 유쾌한 유머코드도 주제에 걸맞지 않는 웃음을 선사한다. 주말 한적할 때 이 영화와 함께 죽음을 유쾌하게 고민해도 좋을 것이다.

영화정보	인도 드라마
감독	산제이 리랄 반살리
출연	리 틱 로산, 아이쉬와라야 라이, 쉐나즈 파텔, 아디티야 로이 카푸르

인권위 예산, 장애인은 줄고 국제 세미나는 늘고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예산에서 장애인 인권증진 등 취약분야의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비 예산은 줄어든 반면 국제교류협력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분야의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올해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은 지난해 5억 9,300만 원보다 25.5%(1억 5,100만 원) 줄어든 4억 4,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식제고 사업은 지난해 2억 4,300만 원에서 1억 9,100만 원이 줄어든 5,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이 예산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이나 장애인 인권 교육 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1억 7,2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줄어든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예산 4,5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모니터링단 운영규모도 지난해 220명에서 올해 175명으로 줄일 계획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모니터링단을 관리할 코디는 1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 사업 예산은 지난해 3,1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장애인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예산 2억 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인권교육센터 운영과 통합된 장애분야 인권교육 과정 예산 1억 원, 사업이 종료된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 예산 4,7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제교류협력은 지난해 3억 1,2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늘어난 4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 유럽·아시아 정부대표 200명을 국내에 초청해 정보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비마이너」 기사인용)

MB정부, 장애인복지 정책 이행수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범부처별로 진행 중인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보통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3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8년~2012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각 정부부처별로 지난해까지 장애인 복지정책 이행수준을 평가한 결과 평균 79.2점인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란 지난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중간점검 결과〉

구분	전체 58개	장애인복지분야 15개	장애인 교육 10개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장애인 사회참여분야
평균점수	79.2	73.5	79.6	88.3	80.7	73.7
평균결과	보통	보통	보통	우수	우수	보통

(「토마토TV」기사인용)

광명시, 장애인콜택시 365일 연중 운행

광명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광명희망카’를 2월부터 대폭 확대하여 운행한다. 지난해 9월 ‘광명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휠체어 자동 승하차 기능을 갖춘 차량 두 대를 운영해온 시는 올해 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해, 2월부터는 총 3대의 차량을 운영한다. 차량을 최초 운행한 지난해 9월에는 월 200여명의 시민이 이용했으나 3개월 후인 12월에는 420여명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에만 운영하던 차량을 연중 운영한다. 운행시간도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콜택시 ‘광명희망카’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40% 수준이다. 광명시 관내는 1500원만 내면 되고,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를 운행할 경우 기본요금에 1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연합뉴스」 기사인용)

멈춰선 서울시 이동권, 예산 있어도 안쓴다

서울시가 2011년 저상버스 167대분에 해당하는 167억 원의 예산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015년 전체운행버스 중 저상버스를 50%까지 도입한 뒤에는 저상버스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저상버스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지원금은 버스 1대당 1억 원씩 모두 370여억 원으로 국토부가 40%(140여억 원), 서울시가 60%(230여억 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예산을 수립했다. 운수회사는 저상버스 대당 가격인 2억 원 중 절반을 국시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1억 원을 투자하면 된다.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CNG버스 대당 가격이 1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업체 부담 없이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반기 199대 도입 이후 171대에 대한 예산 100억여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하반기 집행해야 할 국비 67억여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다.

시는 100억 원의 교통약자 복지 예산을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일반예산으로 돌려 시장 공약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비마이너」 기사인용)

사흘간 굶기고…손바닥 때리고…경기도, 장애인시설 22곳 인권침해 적발

‘도가니 사건’ 이후 경기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경기도는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침해 등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는 장애인 사이의 신체접촉이 2건, 장애인 간 다툼이 7건, 폭언 1건, 손들게 하기, 손바닥 때리기 등 체벌 의심 사례 10건 등이 적발됐다. 또 식자재와 시설 위생관리 등 부적합 운영 사례도 12건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사흘 동안 식사를 주지 않고 묶어두었던 미인가 시설 1곳은 폐쇄했고, 감금 의심 사례가 있는 1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종사자의 폭력이 의심되지만 당사자의 부인으로 폭행사실 확인이 어려운 3곳은 시·군 책임 아래 재조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시설장 퇴출과 함께 고발조처할 방침이다.

도는 각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 165명으로 28개 민관합동조사팀을 꾸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160곳(법인운영 74곳, 개인운영 66곳, 공동생활가정 20곳)에 시는 장애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겨레」 기사인용)

인권위 “장애유형 고려않은 장애인주차구역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 아래 인권위)가 보행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장애등급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ㄱ아파트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ㄱ아파트 측에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아무개(남, 50세) 씨는 “ㄱ아파트 입주자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데, 아파트 측이 실제 보행상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ㄱ아파트 측은 지난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주차관리내규를 정해 장애등급순(4급 이하 제외)과 연령순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우선 배정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ㄱ아파트의 내규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관한 고려나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등급 순으로 주차구역을 배정하면, 상지절단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불가)이 하지절단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에 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우선 배정되는 불합리성이 있다”라면서 “특히 하지관절, 시각장애, 청각장애 4, 5급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에도 이용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실제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운영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차법에서 특별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홍보 및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해당 구청이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구청에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홍보를 권고했다. (「비마이네」 기사인용)

서울시, 신규 공무원 10% 장애인 채용

서울시는 지난 1월 11일 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6대 인사원칙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신규 공무원 중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장애인 채용 비율인 3%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계획으로 장애인들의 공직참여를 활발히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장애인은 시험 응시시 장애유형에 따라 점자문제지,

확대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수화통역사, 휠체어 책상 등 여러 편의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시험시간 역시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기존시간의 1.5배에서 1.7배로, 뇌병변장애인은 1.2배에서 1.5배로 연장된다.

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인원의 10%인 67명을 저소득층으로, 9급 기술직 채용인원의 30%인 40명을 고졸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서 모집하며 필기시험은 6월 9일, 면접은 8월27일부터 9월3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개 장애인시설(이용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월 9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00개 장애인시설 중 39개의 시설에서 인권침해사례가 59건이 발견되었고 위법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시설장고제 등 행정처분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하였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가 6건, 폭행의심사례 6건, 학대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 수치심유발사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불량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강요 9건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대책으로는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공포(7월27일부터 시행)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의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 수첩을 제작하여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날개를 달자 !!

생명체와 같이 변화하는 정보(웹)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주된 장애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표준 및 접근성 진단·컨설팅 전문그룹이며,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컨설팅분야 최초 사회적기업

●●● 웹 표준·웹 접근성 진단컨설팅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 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용성 진단평가로 장애인 당사자 사용편의성 점검

●●● 웹 모니터링 서비스(Web Monitoring Service)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개선 사업 이후 웹 접근 성 품질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웹 접근성(WA) 인증

-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 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및 장애인 사용성 진단 평가 실시



T.(02)2678-0078

E-mail. webwatch@hanmail.net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 이권희)	T. 02.2252.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4층
부산 (대표: 김호상)	T. 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35-14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61-2 1층
대전 (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39-4번지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01-3 신라프라자 105호
경기 (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도구 정발산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 박광순)	T. 041.579.2752	충남 천안시 두정동 1903 태산빌딩 202호
전북 (대표: 김미아)	T. 063.229.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47-1
경남 (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1번지 토월복합상가 3층 303호
제주 (대표: 고현수)	T. 064.751.8097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12-22 1층